



상호무역협정을 통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와 기업의 대응

미국은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상대국에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 불공정무역 억제, 수출통제 공조, 관세회피 단속 등 대중국 견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협정에는 의무 미이행 시 관세 인상, 특혜 철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은 301조 관세 등을 병행해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향후 미국과 상호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수출·투자 시 중국산 원재료·부품 사용과 중국 기업과의 거래·협력에 따른 리스크 점검이 요구된다.

1. 美 상호무역협정의 대중국 견제안보 조항

▶ 미국은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상대국에 대중국 견제 공조를 요구

- 트럼프 2기 출범 후 미국은 10개국과 상호무역협정(Agreement of Reciprocal Trade, ART)*을 체결
 - * (상호무역협정 체결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아르헨티나, 요르단, 에콰도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 * 한국·일본·EU·베트남 등과의 기본합의(framework deal)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나, 대체로 구체적 의무보다는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
- 상호무역협정은 관세·비관세장벽 완화뿐 아니라 제3국의 비시장적 관행 및 강제노동·환적 대응, 수출통제 공조 등을 포함
- 대응조치 대상(제3국)으로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 않으나, ‘우려 국가’, ‘비시장경제’ 등의 표현과 미국의 기존 대중국 조치를 고려할 때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

상호무역협정상 대중국 견제 규범 주요 내용

조항 유형	주요 내용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미국이 제재하는 기업의 상품 수입을 제한
제3국 대상 무역 제한 공조	미국이 제3국 수입을 제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하거나 이행방안을 협의
제3국 소유·지배 기업 규율	제3국 소유·지배 기업의 불공정 관행과 대미 저가·과잉 수출 등에 대응한 조치 시행
수출통제 공조	민감 기술·전략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에 협력하고, 미국 제재 대상과의 거래 제한을 추진
투자안보 협력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 위험 심사와 정보공유 등 투자안보 협력 강화
원산지·관세회피 대응	제3국의 협정 혜택 방지를 위해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고, 불법 환적·관세회피 단속을 강화

- 이러한 규범은 중국 기업의 불법 환적·원산지 세탁뿐 아니라, 제3국에서의 투자·생산 확대 및 원자재·부품 공급 등을 통한 일견 합법적일 수 있는 미국 시장 접근을 견제하려는 취지
- 트럼프 1기 대중국 관세 부과 이후 미국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17년 21.6%에서 '25년 9.0%로 감소했으나, 베트남 등 제3국과 중국 간 무역·투자가 확대된 데 기인

▶ 국가별로 의무 수준·이행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강제노동 수입금지 의무가 가장 엄격

-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항이 모든 대상국에 가장 엄격한 의무를 요구하며, 제3국 대상 무역 제한과 수출통제 공조, 관세회피 단속도 일부 국가에 강도 높은 의무를 부과
- (강제노동 수입금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제도의 도입·이행을 의무화하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원자재·부품을 일부 사용한 상품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
- (제3국 무역 제한 공조) 미국이 경제·국가안보 목적으로 중국 등 제3국에 부과한 관세·쿼터·수입 금지 등을 협정 상대국에 통보하면, 상대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
- (제3국 소유·지배 기업 규율) 중국 등 제3국 소유·지배 기업의 불공정 관행으로 대미 저가 수출이 확대되거나 미국의 수출이 감소할 경우 대응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 다만 불공정 관행의 범위와 대응수단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상대국 재량이 큼

주요국 ART의 대중국 경제 안보 조치 비교

※ 조항상 요구 수준 : ■ 구체적 조치 내용 명시 ■ 조치 유형 명시 ■ 조건부 조치·협력 ■ 조치 가능

조항 유형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아르헨티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수입금지제도 도입·이행					
제3국 대상 무역 제한 공조	동등한 효과의 제한조치			보완적 제한조치	유사 제한조치	필요시 유사 조치
제3국 소유·지배 기업 규율	불공정 관행 대응조치 도입·이행					
수출통제 공조	미국 수출통제에 부합하도록 조정				사안별 미국 통제에 부합	필요시 협력
투자안보 협력	심사제도 유지·적용	심사제도 도입 검토	심사제도 도입·적용	투자정보 제공 협력		심사제도 검토 협력
원산지	원산지 규정 필요시 설정 가능					
관세회피 대응	협력협정 체결	단속조치 도입·집행		협력협정 체결	단속조치 도입·집행	협력협정 체결

자료 : 각국 ART 협정문부속서 및 PIIE(2026)¹⁾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주 : 상호무역협정 체결국 중 한국의 수출액이 큰 6개국을 선정해 비교. 협정의 핵심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개별 적용 조건은 생략. 색상은 의무의 구체성·범위·조건을 감안하여 표기

1) Mary E. Lovely and Christine Y. Wan(2026.6.4.), "US reciprocal trade deals built to push America's trade partners away from China," PIIE.

- (수출통제) 대만에는 첨단 반도체 생산거점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첨단 반도체·장비의 대중국 우회 공급 방지, ▲美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에 맞춘 국내 규정 정비, ▲포괄통제* 도입을 요구
- * 포괄통제(Catch-all Controls): 통제목록 외 품목도 최종용도·최종사용자에 따라 수출허가를 요구하는 제도
- (관세회피 대응) 미국과 관세회피 방지 협정을 체결하고, 일부 국가에는 단속조치 도입·집행 의무도 부과하며, 비당사국이 협정 혜택을 누릴 경우 원산지 규정을 강화토록 요구

2. 관세조치를 통한 미국의 협정 이행 압박

▶ 협정 미이행 시 미국은 관세 인상 또는 관세 면제 철회 등으로 대응하도록 규정

- 미국은 상대국이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국내법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방글라데시와의 협정은 상호관세 재부과까지 명시
- (대만) 수출통제 공조 등 경제·안보 조항의 이행을 관세 면제와 연동시켜, 반도체 수출통제 협력이 미흡할 경우 대만이 확보한 반도체 232조 무관세 쿼터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

▶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의 경우, 301조 관세를 동원해 이행 압박을 강화

- 미국은 강제노동 상품의 수입금지·집행 수준에 따라 60개 경제권에 301조 관세(10~12.5%)를 부과해, 협정상 의무 부과와 함께 **관련 제도의 도입·집행을 압박**
- 강제노동 상품의 수입금지를 약속한 협정 체결국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되, 관세 조정 권한²⁾을 명시해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도 가능**
- 상호무역협정 체결 10개국 중 6개국이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 규정이나 부처 간 이행체계를 마련³⁾했으며, 이 중 5개국은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개시('26.3.12.) 이후 제도를 도입

2) The White House(2026.7.23.),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in the Investigations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of the Acts, Policies, and Practices of 60 Economies Related to the Failure of Each Economy to Impose and Effectively Enforce a Prohibition on the Importation of Goods Produced with Forced Labor," Sec. 3(e).

3) 해당 6개국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대만, 에콰도르, 과테말라 및 엘살바도르. Steptoe(2026.8.5.), "From Two Regimes to Many: Preparing for the Global Proliferation of Forced Labor Import Bans".

상호무역협정 체결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 제도 도입 사례

국가	일자	주요 조치
인도네시아	‘26.4.15. 시행	무역부령 제9호에 의거 강제노동 생산이 확인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
캄보디아	‘26.7.1. 시행	부처 공동규정 제450호에 의거 강제노동 관련 상품의 수입금지 및 조사·단속 체계를 마련
대만	‘26.7.30. 발표	경제부·노동부 공동 심사체계를 마련해 강제노동 상품의 수입을 제한

자료 : Steptoe(202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상호무역협정 체결국 외에도 인도·이스라엘 등 8개국이 수입금지 규정을 도입·승인했으며, 영국·필리핀·브라질 등 8개국이 입법 또는 규정 마련을 추진 중(‘26.8월 기준)⁴⁾

▶ 공급과잉 관련 301조 관세도 향후 협정 체결국의 대중국 불공정무역 대응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 美 무역대표부(USTR)는 301조 조사 개시문에서 조사 대상국의 자체 과잉생산 외에도, 해당국이 중국 등 공급과잉국의 대미 우회수출 경로나 해외 생산거점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지적⁵⁾
- 중국 전기차 기업 BYD의 태국, 브라질, 헝가리, 튀르키예 생산기지 확대를 대표적 사례로 거론하며, EU 역내 자동차 공장의 가동률이 55%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EU 정치·경제계가 중국 기업의 현지 생산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고 지적⁶⁾
- 이에 비추어 공급과잉 301조 조치 결정 과정에서 각국의 생산능력과 대미 무역흑자뿐 아니라 중국계 기업의 현지 진출 현황, 중국산 투입재 의존도 등도 주요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
- 공급과잉 301조 조치안은 미·중 정상회담(9/24)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⁷⁾, 조사 대상국이 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국산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 중국계 기업 관리·감독 강화, 우회수출 단속 등 대중국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4) 도입·승인: 인도·이스라엘·파키스탄·도미니카공화국·스리랑카·온두라스·니카라과·트리니다드토바고. 추진: 필리핀·브라질·영국·칠레·페루·노르웨이·코스타리카·우루과이. USTR(2026.7.28.), “Notice of Actions in Section 301 Investigations of Acts, Policies, and Practices of Various Economies Related to the Failure of Each Economy to Impose and Effectively Enforce a Prohibition on the Importation of Goods Produced with Forced Labor,” Federal Reg. 47318.; Steptoe(2026); Freedom United(2026.7.), “Forced labor import bans”를 종합해 저자 집계.

5) USTR(2026.3.17.), “Initiation of Section 301 Investigation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of Certain Economies Relating 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 91 Fed. Reg. 12886.

6) Ibid.

7) 조치안 발표 이후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제 관세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시행될 것으로 전망. Ari Hawkins and Oliver Ward(2026.9.17.), “Trump administration delays tariff round until after pivotal China summit,” Politico Pro.

▶ 美 행정부의 불법환적 단속 강화도 협정상 원산지 검증 및 관세회피 방지 의무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음

- 백악관은 중국산 제품의 제3국 우회수출 및 원산지 세탁 문제를 지적한 ‘환적 사기 보고서’⁸⁾를 발표(‘26.8.13.)하고, 38개 국가·지역을 환적 위험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분류
- 상호무역협정 체결 10개국 중 대만·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7개국과 기본합의(framework deal)를 타결한 베트남이 환적위험국에 포함됨

‘환적 사기 보고서’의 중국산 제품 환적 위험국 분류

구분	특징	대상 국가
1등급 (Tier 1)	산업 기반이 다양하고 대미 수출과 중국 연계 교역이 활발해, 정상 교역과 불법 환적의 구분이 어려움	한국, 일본, 대만 , 멕시코, 캐나다, EU, 인도, 이스라엘 (8개 국가·경제권)
2등급 (Tier 2)	중국산 투입재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	베트남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브라질, 태국, 튀르키예 (6개국)
3등급 (Tier 3)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작지만, 자유무역지대와 국경을 활용한 우회수출이 용이하고 관세집행이 취약해 환적 위험이 높음	캄보디아 , 싱가포르, UAE, 필리핀, 방글라데시 , 아르헨티나 , 요르단 등 (24개국)

자료 : White House 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2026)

주 : 굵은 글씨는 상호무역협정 체결국 및 기본합의국을 의미

- 위험국 분류가 곧바로 관세 부과나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보고서는 AI 기반 환적 탐지체계를 구축하고 적발 시 관세 추징과 수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 이에 따라 협정 체결국도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기업·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심사, 관세회피 조사, 통관정보 공유 등 협정상 의무 이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음

3. 영향 및 시사점

▶ 대미 수출 시 요구되던 중국산 원재료·부품 사용 및 중국 기업과의 거래·협력 관리가 상호무역협정 체결국 대상 수출·투자에도 필요해질 전망

- 협정 체결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 대중국 무역제한 및 관세회피 단속이 강화되면 수출기업의 공급망 추적 및 입증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중국 기업과 거래·협력하거나 공동 투자하는 기업은 중국 기업 관련 규제와 투자안보 심사 강화로 현지 사업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

8) White House 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2026.8.13.), “The Great Transshipment Scam: Rise, Scope, and Costs”.

- 협정 체결국이 중국산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 조치를 추진할 때 한국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25.1.1.~’26.9.21. 한국산을 대상으로 개시된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사 56건 중 43건(76.8%)은 중국산도 함께 조사⁹⁾

▶ 기업은 미국의 규제 수준에 맞춰 공급망을 관리하고, 협정 체결국의 이행 동향을 지속 점검할 필요

- 미국과 상호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미국 규제 수준을 참고해 원재료의 공급처·원산지, 주요 생산공정 및 거래·운송자료를 확보
- 협정 체결국의 관련 법령 정비뿐 아니라 실제 조사·단속 사례를 점검하고, 확인된 집행 기준을 공급망 관리 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 중국산 원재료·부품 사용 비중이 낮고 공급망 관리체계를 갖춘 기업은 협정 체결국 공급망에서 중국산을 대체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9)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DB

(<https://www.kita.net/importRegulation/importRegulation/importRegulationCardList.do>) 참조.